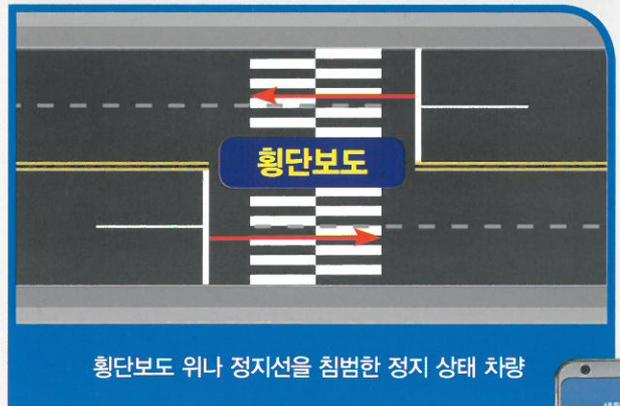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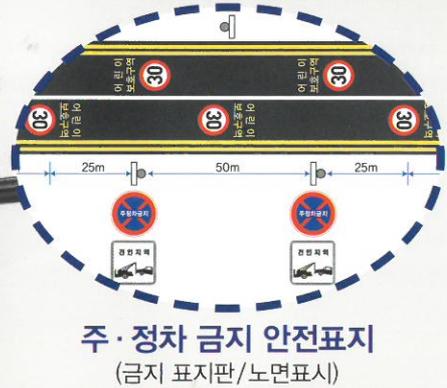


불법 주·정차

여기는 **절대** 안됩니다!

불법 주·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.



- 신고(접수) 요건
 - ▶ 사진 자료 첨부
 -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
 -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 -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
- 신고방법 : 스마트폰 앱(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)
- 과태료 부과 :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

